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8
----------	------

제출년월일 : 2010. 6.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가. 「자동차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정비 하고,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정비업의 등록기준 정비(안 제4조, 안 별표 3)
- 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용어 정비 (안 제5조, 안 별표 3)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 수정

□ 참고자료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인”을 각각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폐차업의 등록기준)”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4,500m ² 이상
장 비	구난차(견인능력 3톤이상)	1대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이상)	1대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이상)	1식이상
	압축기(투입용적 10m ² 이상)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이상)	
	용기내부의 잔가스 회수설비	용기내부의 잔가스 회수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 장치 중 선택하여 1대이상
	용기내부의 잔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 감지기	1대이상
소화기	1대이상	

※ 비고 :

1. 환경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별표22의 비고 11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3.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 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4.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 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⑤ 제4항에 의한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비고 11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에 따른----- -----</p> <p>③ ----- -----에 따른----- ----- -----에 따른----- -----에 따른----- -----</p> <p>④ ----- 따른----- ----- ----- ----- ----- ----- ----- 따른----- -----</p> <p>⑤ ----- 따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2 ----- 따른----- ----- 따라----- -----</p>

현행	개정안
<p>제5조(폐차업의 등록기준) ①자동차 <u>폐차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u> 1 ~ 3 (생략) ② (생략)</p>	<p>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① <u>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 법령</p>	<p>□ 자동차관리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p> <p>제51조 (안전교육) ①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2와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없음”</p>
<p>관련자료</p>	<p>“해당없음”</p>